

“행복한 대전 만들기”

2011 제1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 | 일시 | 2011년 3월 31일(목) 오전10시
- | 장소 |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
- | 주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포럼 진행 일정

| 시 간 | 내 용 |
|-------------|------------------------------------------------------------------------------|
| 10:00~10:20 | 개회 및 환영사 인사말: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
| 10:20~10:30 | 참석자 소개 사 회: 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
| 10:30~11:10 | 주제 발표 “가족 정책 흐름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과제 및 전망” 발표자: 고선주(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
| 11:10~11:30 | 지정토론 토론자: 박성옥(대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 11:30~11:40 | 자유토론 좌 장: 이연복(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 11:45 ~ | 폐회 정리 및 오찬 |

2011 제1차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 성 명 | 소 속 | 사무실 |
|------|----------------------|--------------|
| 강병도 |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 | 609-2376 |
| 강은혜 | 대전YWCA 부장 | 254-3035 |
| 강청순 |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시설장 | 556-2666 |
| 고선주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 02-3140-2201 |
| 구영본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장 | 252-9989 |
| 김동식 | 한밭사랑봉사회 단장 | 528-7382 |
| 김선옥 |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회장 | 524-6771 |
| 김순례 | 한국꽃꽂이협회 대전충청지역연합회장 | 531-5747 |
| 김시권 | 대덕구다문화지원센터 팀장 | 639-2664 |
| 김애진 |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222-6242 |
| 김은순 | 대전새마을부녀회장 | 471-2902 |
| 김진배 |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장 | 254-7793 |
| 김춘경 |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장 | 488-2979 |
| 박선해 |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 936-7344 |
| 박성옥 |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252-9997 |
| 박소현 |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 252-9997 |
| 박유심 |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600-2525 |
| 박재영 | 둔산지방경찰청 | |
| 배순화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장 | 631-5570 |
| 백명자 |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여자쉼터 소장 | 534-0179 |
| 선오스님 | 만불선원 | 223-7959 |
| 손정자 | 한국여성지도자연합 대전광역시지부회장 | 533-2944 |
| 신보미 |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소장 | 222-7042 |
| 어요나 | 대덕종합사회복지관 | 936-9344 |

| 성명 | 소속 | 사무실 |
|-----|-----------------------------|----------|
| 유계영 |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52-9997 |
| 유미 | 대전종합사회복지관장 | 627-2957 |
| 유숙희 | 대전동부다문화교육센터 강사 | 253-7588 |
| 윤부덕 | 대전자혜원 대표 | 672-8262 |
| 이연복 |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629-6162 |
| 이연신 | 대전종합사회복지관 | 627-2957 |
| 이영미 |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936-7343 |
| 이옥분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 932-9993 |
| 이인순 |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600-3551 |
| 이창기 | 대전발전연구원장 | 530-3503 |
| 임영순 |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장 | 637-1366 |
| 임우현 | 루시모자원 대표 | 256-2911 |
| 임은진 | 대전동부다문화교육센터 | 253-7588 |
| 전동찬 |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 | 609-2376 |
| 정경식 | 대전여성단체협의회회장 / 대한어머니회대전시연합회장 | 532-1610 |
| 정용아 |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팀장 | 252-9997 |
| 지현경 |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 252-9997 |
| 최은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복지다문화정책실장 | 820-0251 |
| 최홍순 | 육연노인복지센터장 | 535-5050 |
| 황미옥 | 유성구다문화가족사랑회 실장 | 825-7233 |
| 황성업 | 연광원 재활과장 | 581-0083 |
| | | |
| | | |
| | | |

2011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운영위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 주혜진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정책센터장 | 530-3522 |
| 박노동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530-3523 |
| 김은하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 530-3548 |
| 심정인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조원 | 530-3550 |

2011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은

- 지역 공동체사회의 변화속에서 대전지역의 가족현상을 파악하고,
- 가족의 가치 확대와 가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전시민의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며,
- 변화에 적응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이끌어내고,
- 건강한 가정과 미래경쟁력을 가진 대전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시민운동(New City Movement)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1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은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1. 목 적 : 대전지역사회의 가족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의견 수렴
2. 방 법 : 전문가 및 대전 시민을 초청한 정규 포럼
3. 대상자 : 전문가 및 단체(교수,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종사자, 가족복지사업기관 종사자, 복지지원기관 종사자, 기업인, 종교인 등), 시의회 및 가족에 관심이 있는 대전 시민
4. 효 과 : 지역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적 가족정책 수립 및 대전시,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문화 확산
5. 시 기 : 4회 예정
6. 주 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주제 발표

가족 정책 흐름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과제 및 전망

고선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가족정책 흐름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과제와 전망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장 고선주

사회변화 / 자발적 가족형성 및 유지 낱말

- 가족규모의 축소와 세대구성의 단순화
 - 핵가족화 및 저출산 지속으로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
- 가족형태 다양화
 - 한부모 가구수 889천가구('90) -> 1,370천 가구('05)
 - 국제결혼 건수 : 4,710건('90)-> 43,121건

가족 기능의 변화

- 재생산 기능의 급격한 하락
- 자녀양육 및 교육기능의 약화
- 가족복지 기능의 약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 전통적 성역할 의식의 지체와 세대간 부양의식 약화

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

- 가족복지의 해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거시-미시정책의 조화

핵심은? - 돌봄 기능약화, 저출산

가족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 및 합의
여성가족부 특성이 반영된 가족정책 시작

1 차 거 가 가 정 지 원 정 책 의 기 본 방 향 및 목 표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조정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

비전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정책과제

가족돌봄의
사회화

1-1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1-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직장·가정의
양립

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1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3-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3-3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3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5-1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5-2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6-1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정비
6-2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05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16만명으로 매년 급증추세
 -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 비율 13.6%('05)
 -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비율 35.9%('05)
-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소통문제,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이 어려우며 국적취득전까지 신분상 불안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부적응문제 심각

- 다문화가족의 사회 문화적 적응지원
 - 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 전국실태조사 실시하여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활용
- 차별금지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가칭) 제정 추진
 - 병역법시행령상 징집면제 사유 (외관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아) 삭제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확대 등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효율화
-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 결혼이민자 가족 중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 결혼이민자의 안정체류 지원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방안 마련
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인권 보호

•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직업 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강화로 경제적 생활보장

• 혼혈인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마련

보거보지가족부 가족정책 이관 L T T T O T L

•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08.3) 및 시행('08.9)

- 다문화가족에게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언어통역 및 법률 상담
서비스 등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실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12) 및 시행('08.6)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로 관리, 허위·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

- 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12) 및 시행('08.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7.12) 및 시행('08.6)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07.5) 및 시행('08.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

• 06.4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한국어 교육 등 초기 사회적응지원서비스 제공
- '08.10 입국전부터 정착기까지 보건, 복지, 가족 영역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수립.추진
- 국제결혼중개과정의 체계적 관리
- 다문화가족 초기 사회적응지원(방문교육;한국어교육,자녀양육지원,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언어발달 지원)
- 결혼이민자 경제.사회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2008년 이전(여성가족부)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통합적 가정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 양성평등 제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2005년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호주제로 인한 가족 차별 및 피해사례 방지.
- 저출산 및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지원 측면 -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조손가정, 미혼모 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 높임.
- 제도적 기반 마련 - 실태조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정책지원센터 등 마련

~2009.3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가족관련 법령 제정으로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
-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
- 아이돌보미, 학습 돌보미, 미혼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등으로 가족지원업무 확대
- 다문화가족전국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업무 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보건복지가족부

- 가족정책을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 규정하여 가족정책이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정책으로 발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제결혼 증가,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 발생, 국가간 외교 문제
다문화가족지원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름
 - 정책 수혜 대상으로서의 가족의 우선순위 문제
-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대상이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 아동, 요보호 여성 등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을 위주로 실시해옴으로써 전체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에 미흡.
- 국가의 개입시기가 가족기능이 실패한 후인 요보호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짐으로써 비용은 많이 드는 대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보편적/예방적 서비스로 나아가야 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가족정책 – 보편적/예방적 서비스 지향
(사회적 성숙 및 예산투자에 대한 합의 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시작.
- 국제결혼 부작용 문제 부각 – 지원대상으로 자각, 정치적 관심
- 새로운 정책 확대를 모색중인 정부
- 보편적 예방적 가족정책 서비스 확대에 대한 설득과정 VS.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신속한 합의**

2차 계획

- 가족규모의 축소와 세대구성의 단순화가 지속된 변화
- 향후 5년간에도 부부와 양친으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핵가족 특히 부부가족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
- 1인가구의 증가세 또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족의 사회구성원의 총원기능은 물론 가족돌봄의 기능약화가 예상됨.
- 맞벌이 가구의 보편화 예상
- 가치관의 변화, 이혼증가, 결혼이민자 인구 증가 등으로 가족형태의 다양성 또한 향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 |
|-------|-------------------------------|
| 정표 비전 |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
|-------|-------------------------------|

| | |
|-------|----------------------------------------------------------|
| 정표 목표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
|-------|----------------------------------------------------------|

| | | |
|-------|-----------------------|----------------------------------------------------------------------------------------------|
| 정표 과제 | 1. 가족가치의 확산 |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
| | 2.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2-2. 부모역할 지원 |
| |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
| | 5.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5-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

다문화 가족의 증가

•2009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만 3000건으로 200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 이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두드러지고 있음.

- 국제결혼 건수 감소 및 가족해체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혼이민자 가족의 출산 등과 결합되어 결혼이민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결혼이민자수 : 13만명('06) -> 20만명('08) -> 47만명('15)

- 결혼이민자 인구비율 0.27%, 0.42%, 0.96%

가족정책의 기능과 위상

- 신사회위험에 대한 해법기제로서 가족정책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선제적인 성장전략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다원화된 사회의 효과적인 통합방안
 - 현대 한국사회는 다문화, 다민족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
 - 향후 다문화가족정책은 특히 유자녀 가족의 경우 자녀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의 역량있는 차세대인력으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통합에 기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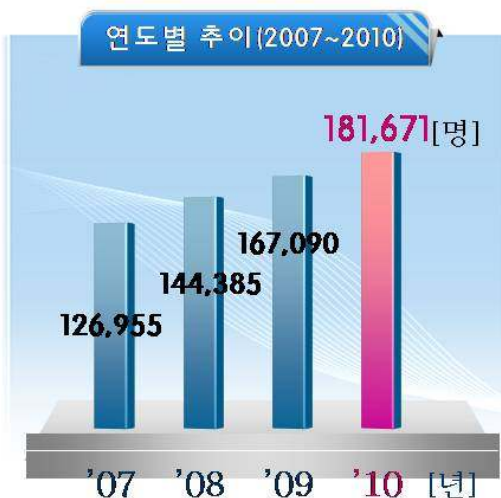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여성가족부 지원정책
 -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가족지원과/다문화가족지원과
- 정책확대 후 나타나는 고민들
 - 다문화정책/외국인정책과의 관계정립

다문화 가족의 개념



결혼 이민자 및 혼인귀화 연도별 . 성별 현황

- 매년 증가하여 2010월 1월 현재 181,671명, 전체 주민등록인구(49,773천명)의 0.36% 차지 (2010.5. 행정안전부)
- 여성이 161,999명으로 89.7% 차지



[2010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N=181,671,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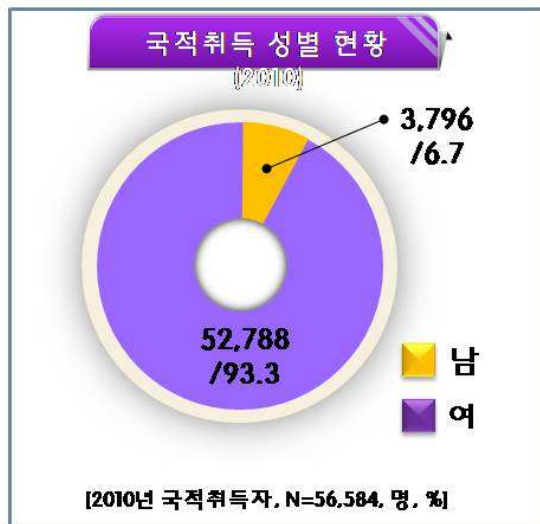
• 국제결혼 증가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우리가족안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심 부족

• 외교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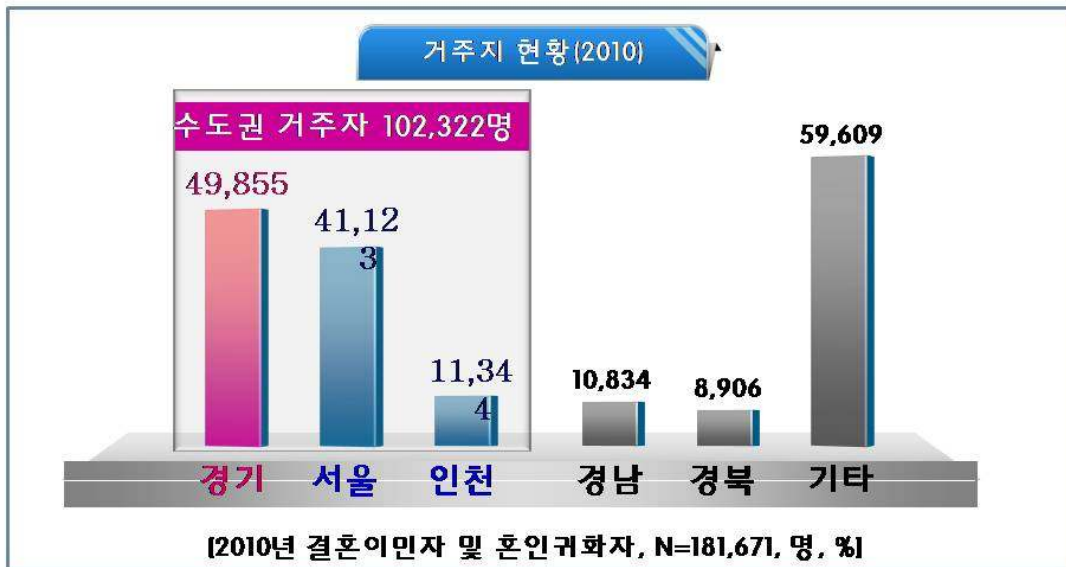
국적 취득 현황

○ 56,584명 (31.1%)이 국적 취득(남 3,796명, 여 52,788명)



거주지 현황

- 수도권 거주자가 56.3%(102,322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경남, 경북 순



거주지

- 거주지 현황으로는 경기와 서울지역에 대다수가 거주하지만 거주지주민중에서의 주류세력은 아님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증가와 사회구성원 구성 변화의 가시적 변화가 보임 / 지자체장의 관심 증가
- 정책적 관심 :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지원정책으로 접근

국제결혼 실태

- 2009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3,300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혼인 비중은 10.8%로 2004년 이후 10% 이상 계속 유지(2010.3. 통계청)



출신국별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만 5,142건으로, 중국 1만 1,364건(45.2%), 베트남 7,249건(28.8%), 필리핀 1,643건(6.5%) 순으로 나타남
-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총 8,041건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
- 외국 남자의 국적은 일본 2,743건(34.1%), 중국 2,101건(26.1%), 미국 1,347건(16.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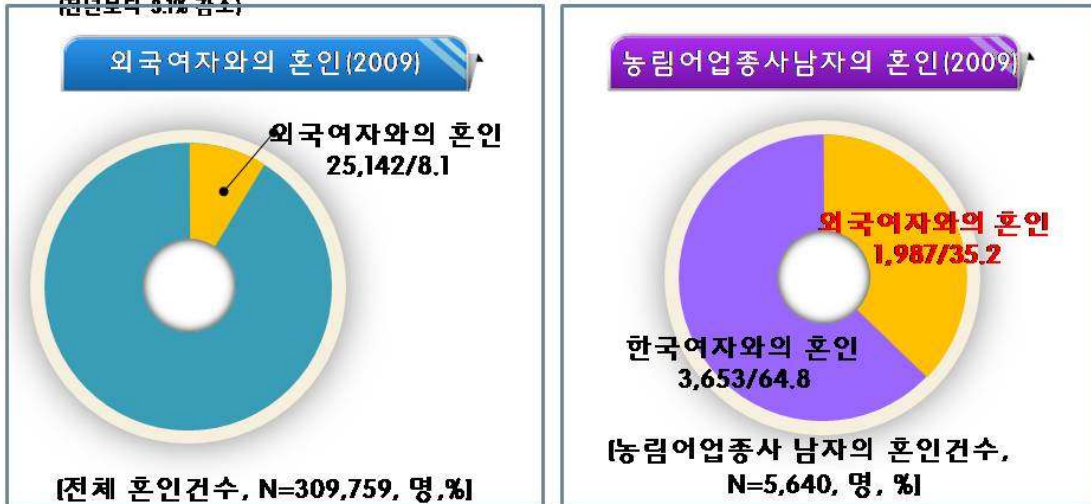
[국제결혼여성, N=28,163, 명, %]



[국제결혼남성, N=8,041, 명, %]

지역·업종별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 전체 혼인(309,759건)에서 외국여자와의 혼인(25,142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이며, 농어촌 지역(읍·면부)이 12.9%로 도시지역(동부) 7.2%보다 높음
- 2009년 혼인한 농림어업종사남자는 5,640명이며, 그 중 35.2%(1,987명)가 외국여자와 혼인(전년보다 3.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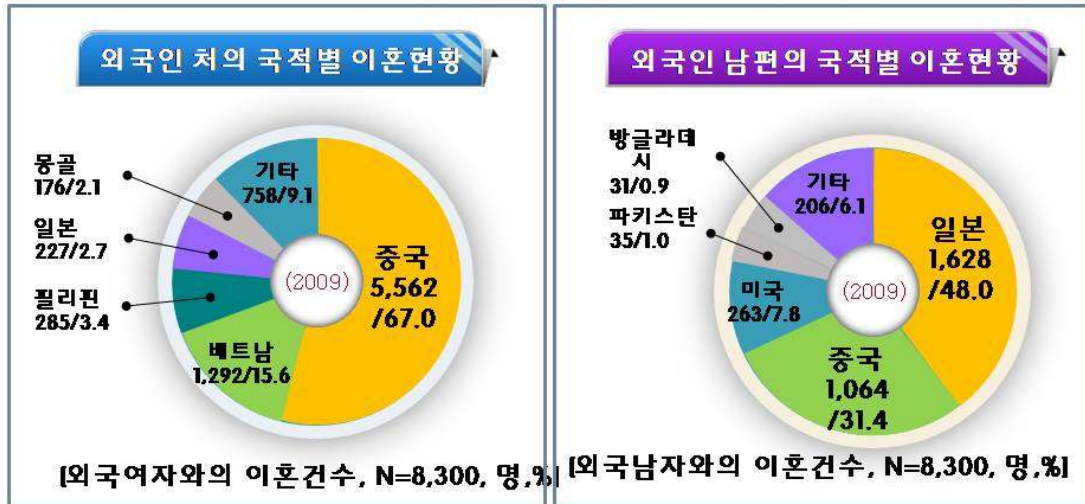
외국인과의 이혼추이

- 외국인과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총 이혼의 9.4% 차지(2010.4. 통계청)
- 2009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11,692건으로 2008년 11,255건보다 437건(3.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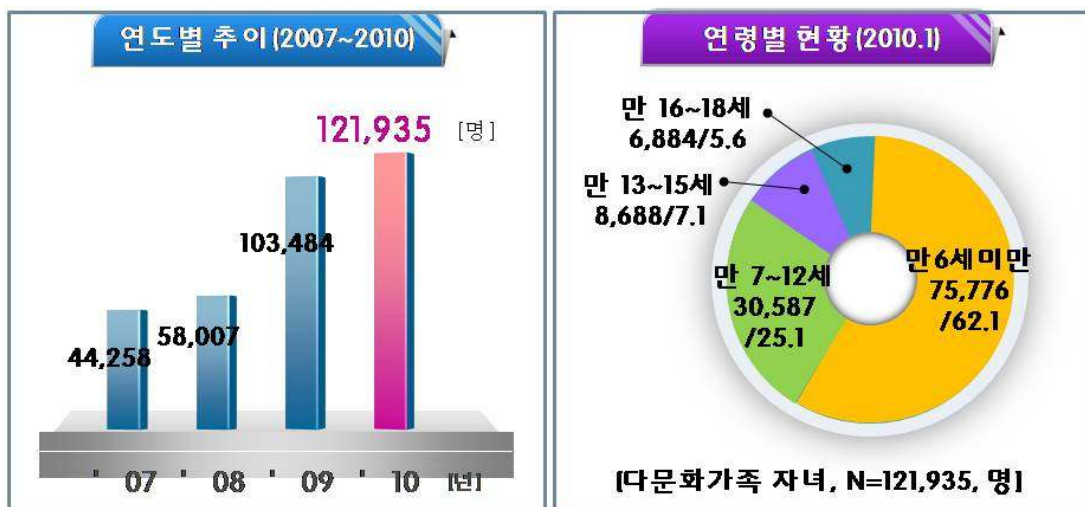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현황

- 2009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은 8,300건이며, 중국 67.0%(5,562건), 베트남 15.6%(1,292건), 필리핀 3.4%(285건) 순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나라는 **베트남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



다문화 가족 자녀 연도별, 연령별 현황

- 다문화가족 자녀는 121,935명으로 '09년도에 비해 14,246명이 증가
- 2007년 44천명 → 2008년 58천명 → 2009년 108천명 → 2010년 122천명으로 매년 증가



초·중·고 재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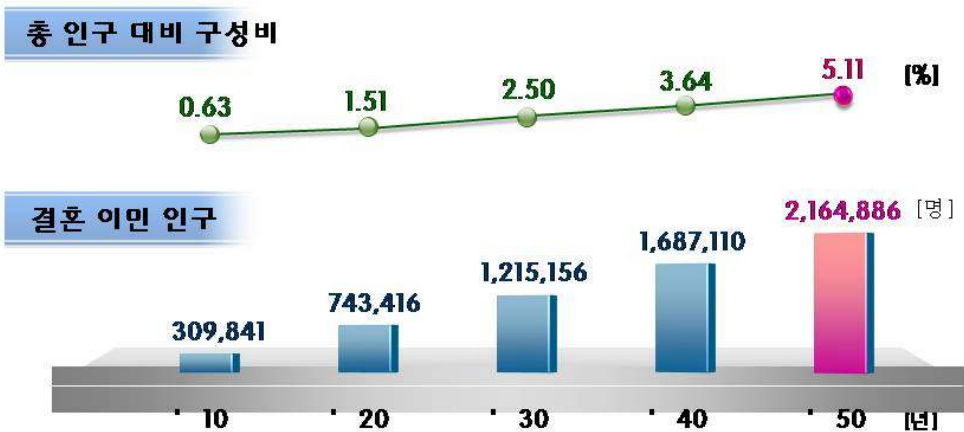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9년 24,745명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 (2009.4. 교육과학기술부)



결혼이민이주(결혼이민자+자녀) 인구전망

- 2009년 결혼이민인구를 기준으로 205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포함한 인구는 총 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자녀) 및 총인구 대비 비중 전망 (2009 기준)



다문화 가족의 삶의 만족도

- 전체 결혼이민자 중 만족스럽게 인지하는 경우가 56.8%, 보통 36.4%로 나타나 현재 삶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합계 |
|------|------|------|-----|--------|----------------|
| 21.0 | 35.8 | 36.4 | 5.6 | 1.3 | 100.0[129,693] |



전망 및 영향 (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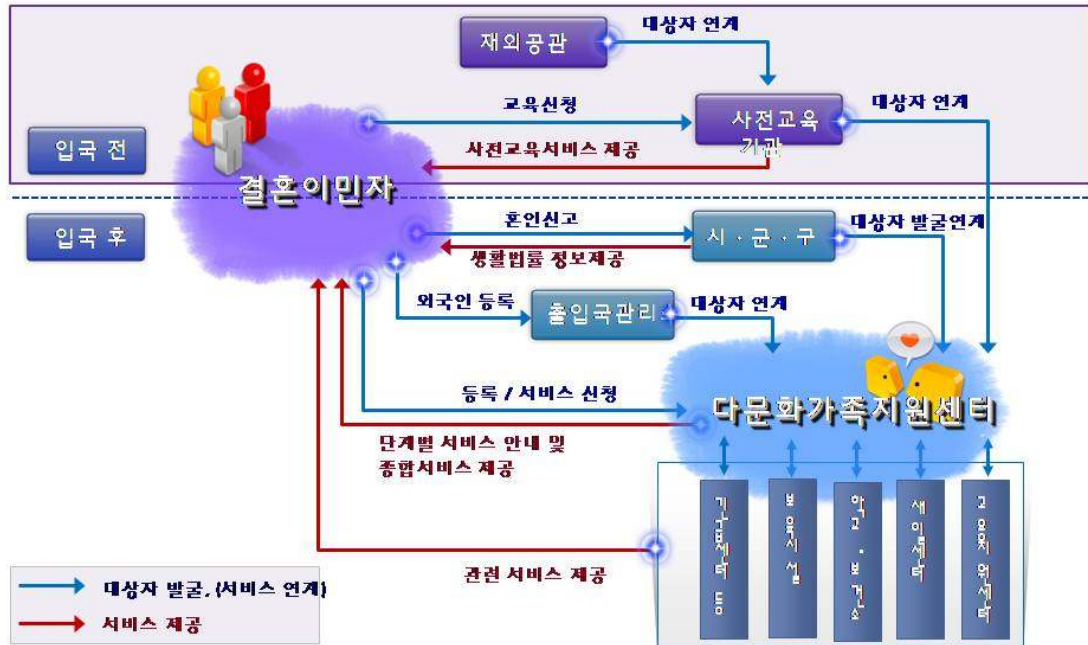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
- 노동시장 및 국가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 활용 가능
- 다문화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양산되고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증진되는 효과

적당 미 영향(여기)

-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경우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요

서비스전달체계



서비스 전달 체계



한국어교육, 통·번역 의사소통 지원

한국어교육의 접근성, 전문성 제고

집합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4단계 교육 실시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 방문교육지대사('11년 3,200명)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방문교육사 : 한국어교육, 전담교육사 등 한국어에 전문성이 있는가

온라인교육

- '다문화가족 e-배움캠프' 온라인교육 운영(6단계, 7개 언어)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발행 교재 및 자체 개발 교재 활용
* 한국어교사 : 한국어교육 자격 소지자 우선, 외국어능력 한국어교육 교원(100시간 이상)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 먼저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통번역지원사('11년 210명, 123개 센터)로 채용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

어휘찾기
교육
상담, 국적, 세대 관련
정보 제공

학교, 병원, 행정,
사법기관 등
어용시 통번역서비스 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자녀 알림장 등
학부모 관련 통역 지원

생활 정책 정보 제공

'다누리' 포털(4개 언어) 운영

- 한국생활에 필요한 교육정보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지식 공유 등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2010년 하반기 2개 언어(카보디언어, 타갈로그어)
연차별 2개 언어 추가



<http://liveinkorea.mogef.go.kr>

온라인 생활 정책 정보 제공

- 다국어판 매거진 'Rainbow+' 발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외교민, 출입국관리소 등 배포 및 '다누리' 게재
* 9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카보디언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일본어
- 한국생활 가이드북(관련 정보 제공) 발간·보급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개입

가족통합교육 실시 및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 시부모, 부부관계, 부모-자녀 등 가족위기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 실시
- 가족갈등, 애착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11년)

'다누리 콜센터(1577-5432)'를 통한 다국어 전화상담('11년)

- 가족갈등 및 위기 예방, 아동생활 안내 및 통·번역 상담서비스 제공
- 10개국 언어별 상담사 배치, 1일 8시간 전화상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등 협력파해 이주여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365일 24시간, 협력파해에 대하여 9개 국어 상담 및 긴급구조 실시('10년 6개소)
 - * 지원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 이주여성심터('10년, 18개소), 의료·법률·출국지원 서비스 등 연계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부모의 자녀 양육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양육 가정방문 지도 실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산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방문
- 방문교육지도사 배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교육정보시스템 설치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진단,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200명('11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언어교실 개설,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역량 개발

- 어머니나라 언어 수업 등에 정체가 많지 않음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도모(100개 교실)

결혼이미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지원

결혼이미자 적합직종 개발 및 직업교육

- 여성세터알마기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연계
- 다문화강사, 언어미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양성

다문화가족 사회연계 강화

-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정책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네트워크 대회(연 1회)

다문화정책 VS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적 문화
 - 부계직계
 - 혼인과 출산의 의미(특히 자식된 도리)
 - 결혼시장에서의 타의적 배제
 -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간단체 결연사업으로 시작
- 가족정책 등장. 부처 이관 등 정책적 환경 변화
-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9월 시행)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
- 다문화 가족내 가정폭력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지원
- 결혼이민자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확대 -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지원등을 추가

외국인징채(범무부)

- 국제결혼건전화 방안
 - ✓국제결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신설
 - ✓결혼사증발급 지청개정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참여대상자 확대
 - ✓운영기관확대(76->150개)
- HAPPY START 프로그램 의무화
 - ✓외국인등록시 국내 적응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 이민정책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 ✓IOM 이민정책연구원

다문화사회 지원 계획(행안부)

- 비전 : 더불어 사는 성숙한 다문화사회구현
 - ✓ 1. 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정립
 - ✓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 3. 다문화사회 분위기 확산
- 1- 자치단체 업무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확대
 -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개정 지원
 - ✓ 지역단위 외국인정책 민관협력체제 구축
 - ✓ 자치단체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 ✓ 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실시
- 2-
 - ✓ 외국인주민 공공부무채용 및 정책참여 확대
 - ✓ 주민자치센터 활용 외국인주민생활민원혜소
 - ✓ 외국인주민관련민원제도 개선
 -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 자원봉사자 활용 외국인 주민 지원시스템 구축
- 3-
 - ✓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 범국민 인식 개선 및 다문화 사회 공감대 형성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현황 및 주요 내용
 - ✓ 결혼여성미니자 지도자 양성교육 (새마을운동중앙회)위탁
 - ✓ 외국인주민대상 생활정보 안내 및 정보화 교육
- 향후 추진 계획
 - ✓ ' 11년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 ✓ 다문화가정 배우자 공동교육 시범운영 지원
 - ✓ 다문화 가족 등 정보화 교육 실시

비국민 인식 개선 및 다문화사회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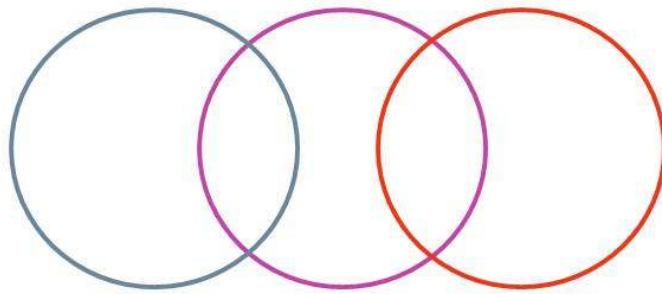
- 현황 및 주요 내용
 - ✓ 차별인식 개선 및 다문화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문화생활체험 우수사례 발굴·확산
 - ✓ 친정부모 초청사업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 '11년도 다문화생활체험수기 공모 및 수기집 발간
 -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실시
 - ✓ 다문화 가정 고향가족 화상상봉 상시 실시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1. 서울글로벌 센터 /글로벌 빌리지 센터
2. 체류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 ✓ 다문화가정
 -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직업센터 확충(10년 7개)
 - 외국인근로자 언어별 컨설팅
 - ✓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창업대학원영양화
 - 소자본창업자를 위한 인크베이팅 사업 시범운영
 - ✓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유학생포럼 운영
 - 외국인유학생 언어실용프로그램 운영 :시정 참여기회제공
3. 다문화 이해 및 소통 강화
4.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외국인학교/주거환경/교통환경/생활환경)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초기 한국생활적응(한국어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 가족생활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통합 - 건강가정지원센터포함



감사합니다

부 록

2011 외국인정책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자료

외국인정책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외국인 정책

2011. 2.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1. 사회통합 정책 환경
2.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시행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4. HAPPY-START 프로그램 의무화
5. 이민정책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1 사회통합 정책 환경

1-1. 국제적 동향

개요

경제위기와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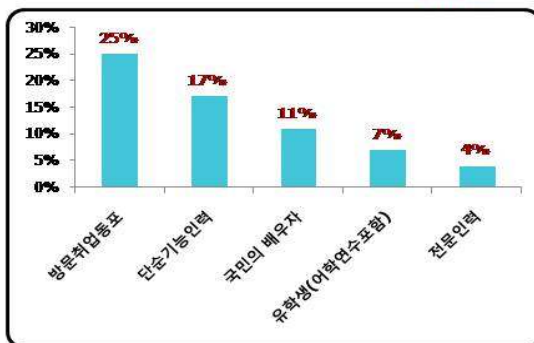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수는 완만하게 증가 추세
-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 영향으로, 선진각국은 노동이민 감축정책으로 전환
 - 경제성장에 노동이민의 영향이 컸던 국가들은 이민자들의 실업문제 대두
 - OECD 및 EU각국은 이민한도 축소와 귀국 장려 등 노동이민 감축정책 실시

1 사회통합 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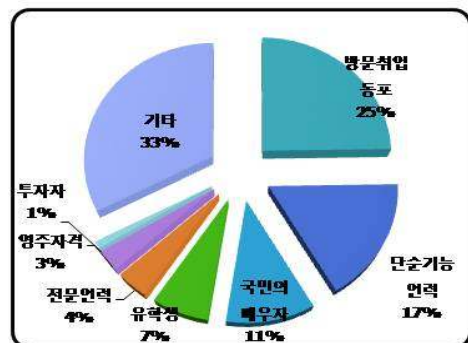
1-2. 국내 환경 변화

채류외국인증가추이

*단위: 명



채류유형의 다양화



1 사회통합 정책 환경

1-2. 국내 환경 변화

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 지속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심화
- 인구의 순유출 상황 지속

다문화 사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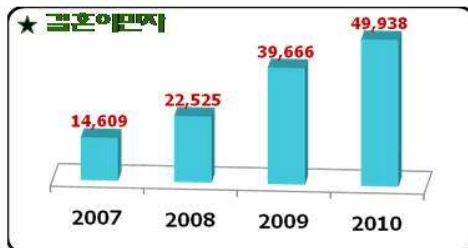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 증가
-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 증가

2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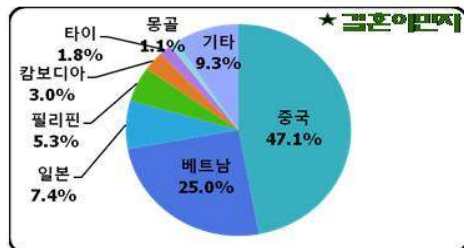
2-1. 추진 배경

- 국제결혼 폐해에 따른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마련 필요
- 결혼시증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내실화로 건전한 다문화 가정 영성 지원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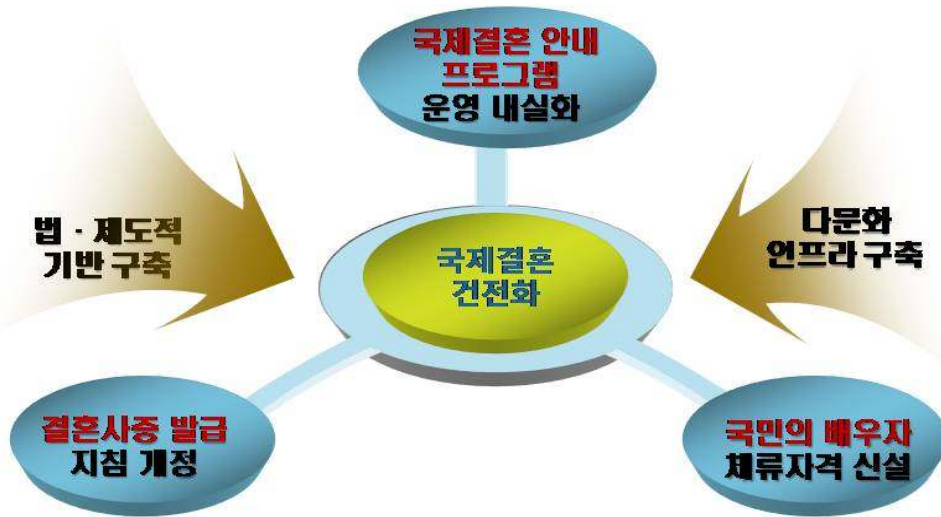


국적별 분포



2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2-2. 추진 내용



2-3.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 국제결혼 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시중 발급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 상

▶ 상대적으로 어촌율이나 한국국적 취득 수요가 높은 국가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

내 용

- ▶ 국제결혼 관련제도 · 문화 등 소개
- ▶ 결혼시중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설명
- ▶ 국제결혼 상담사례 및 국제결혼 경험담 소개

개 연 기

참석시기

▶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 (총3시간)

참석장소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2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2-4. 결혼사증 발급 지침 개정

● 추진배경

- 국제결혼의 부작용 방지, 건전한 다문화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 성립단계에서 정부의 역할 강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 세부사항 절차 규정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발급 심사 강화
- 결혼사증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 국민의 배우자자격으로 변경허가 기준 강화

2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2-5.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신설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만 별도로 관리하는 새로운 자격 신설 필요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혼 등으로 거주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결혼이민자만의 독립된 체류자격 F-6(결혼이민) 신설
 - ※ 현재는 국민의 배우자는 독립된 체류자격이 아닌 세부약호(F-2-1)로 관리
- 기존의 국민의 배우자(F-2-1)사증상의 내용을 F-6 이전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1. 추진 배경

-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갈등예방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사회부적응 심화
- 이민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 지원의 체계적 교육 필요
 - 이민자 적응지원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참여율 저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 ▶ 재한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체류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
- ▶ 교육과정은 ①한국어과정 ②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
- ▶ 대상자 :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현재 의무참여가 아닌 자율참여)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2. 추진 내용

참여 대상자 확대

- 영주자격자 등 특정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허가 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제도 정비
-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자율참여로 운영 중인 '행복드림 Happy-Start' 를 특정국가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의무화 추진

운영기관 확대

- 교육접근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76개 →150개)
- 임신, 출산 등 집합교육 참여 곤란자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참가 대상 확대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3.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성내용

➤ 교육과정: 한국어과정 + 한국사회이해과정

➤ 단계별 구성

| 과 정 | | | 단 계 | | | | | | |
|------------|----------|-----------|--------|---------|---------|-------------|-------------|--------------|--|
| | |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한국어 | 과정 | 기초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고급 | | |
| | 이수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면제 | | |
| 한국사회 이해 과정 | | | | | | | | 50시간 | |
| 단계 배정 | 사전 평가 | 결혼이민 자 | 0점~10점 | 11점~29점 | 30점~49점 | - | - | 50점~100 점 | |
| | | 일반이민 자 | 0점~10점 | 11점~29점 | 30점~49점 | 50점~69 점 | 70점~89 점 | 90점~100 점 | |

※ 한국어 '기초'과정 신설(사전평가 10점 이하의 경우 15시간의 기초과정 이수 의무화)

4 HAPPY-START 프로그램 의무화

4-1. 추진 배경

- 결혼이민자의 경우 입국 전 기본소양 및 한국사회의 관련 제도에 대해 사전준비 못한 상태로 한국사회 유입
- 초기 정착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및 사회적 이질감 등으로 국내 정착에 애로

➤ '09.7.1 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

4

HAPPY-START 프로그램 의무화

4-2. 주요내용

- 외국인 등록시 국내 적응에 필요한 기초정보제공
- 먼저 정착한 국가별 결혼이민자 대표 및 명예 출입국관리공무원 (혼인 귀화자)들이 통역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 인적 네트워크 형성되어 상호교류를 통한 자조모임 여건 조성

내 용

- > 체류여가 및 국적제도
- > 기초생활 질서, 의료, 건강보험, 권려구제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지역별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소개

시 기

- > 매일 넷째주 목요일

참석장소

-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5

이민정책분야 연수프로그램 운용

5-1. 추진 배경

- 재한외국인 국내 정착지원의 다양한 사회통합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정책 추진 효율성 도모
- 지방자치단체 등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자 대상, 이민정책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5-2. 세부 내용

- 내 용 : 정부의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사회 제도 이해 등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국적관련) 경찰, 민간단체 활동가
- 기 관 : KDI 이민정책연구원 (교양시 소재)
- 교육 연원 및 기간 : ■ 분기 40명 (2박 3일, 비합숙)

※ 1기 3월, 2기 6월, 3기 9월, 4기 11월

5 이민정책분야 연수프로그램 운용

5-3. 교육 과목 및 편성

| 분야 | 교육 과목 | 시간(16시간) |
|------|--------------------|----------|
| 이민정책 | 이민정책 동향 및 다문화사회 이해 | 2 |
| | 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 | 2 |
| 사회통합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 2 |
| 등록 | 외국인등록 업무 | 1 |
| 사증 | 사증제도 이해(국제결혼중심으로) | 2 |
| 국적 | 국적 제도 개관 | 3 |
| 현장견학 | 인천공항, 화성보호소 | 2 |
| 특강 |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경험담 | 2 |

감사합니다



다문화사회 지원 사업계획

행 정 안 전 부

'11년도 다문화사회 지원 사업계획

I 추진배경

-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민주화 사회가 성숙되면서 다문화사회¹⁾로 본격 진입
 - 외국인 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증가, 해외동포 입국문화 확대 등으로 외국인주민은 114만명*으로 증가
 - * 총 인구대비 2.3% 수준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비율(10%) 보다 낮지만 개발도상국 평균비율(1.5%) 보다 높은 실정임
 - 남북경제 격차의 확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유입 가속화
 - * '97년 897명 ⇒ '02년 3,128명 ⇒ '07년 12,248명 ⇒ '10년 10월말 19,960명
-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 불가피
 - 취업연령(25~54세) 인구가 '50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 『노동인력 수급불일치 현상』 해소하기 곤란²⁾
 - 남북한 경제·문화교류 확대로 북한이탈주민 더욱 증가 예상
-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국인의 다문화사회 이해증진 등의 우리부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정책개발 및 단계적 추진

1) 다인종사회라는 의미와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복합적 의미
2) 삼성경제 연구소(2010. 5)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II

추진방향 및 목표

비전

더불어 사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

목표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추진
과제



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정립

- 자치단체 업무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확대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개정 지원
- 지역단위 외국인정책 민관협력체제 구축
-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실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외국인주민 공공부문 채용 및 정책참여 확대
- 주민자치센터 활용 외국인주민 생활민원 해소
- 외국인주민 관련 민원제도 개선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자원봉사자 활용 외국인주민 지원 시스템 구축



다문화사회
분위기 확산

-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 범국민 인식 개선 및 다문화사회 공감대 형성

Ⅲ 정책과제 추진계획

1. 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정립

① 자치단체 업무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확대(계속)

□ 현 황

- 외국인주민업무 담당부서 및 인력 배치
 - 시·도는 자치행정과·여성가족정책관 등 3~4개 부서에 평균 4.7명, 시·군·구는 총무과·사회복지과 등 2~3개부서에 평균 1.6명
- 외국인주민업무 전담부서 설치
 - '10. 12월 현재, 전담부서*를 설치한 자치단체는 15개(광역 4, 기초 11)이며, 이 중 課단위 조직을 설치한 자치단체는 3개에 불과
 - ※ 課단위 3개(서울시, 경기도, 경기 안산시), 係단위 12개(부산시, 전북도, 서울 성동·동대문·영등포, 광주 남, 경기 시흥·화성,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구마·경산)

□ 주요 내용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 기준안 마련 시달, 자치단체 권고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인력 배치 확대
 - 총액인건비 및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 시 외국인주민수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업무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 기준안 시달('11. 4월)
-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 확대 독려(연중)
- 총액인건비·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력증원 수요 반영('11. 12월)

2]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개정 지원(계속)

□ 그간 경과

- '06.10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최초 제정
- '08. 5월 제1차 개정
 -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명칭 변경, 시책위원회 신설 등
- '10.12.31 제2차 개정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외국인주민지원 협의회' 및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 신설 등

□ 추진 실적('10.12월말)

-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22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완료
 -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기초자치단체는 208개 시·군·구가 조례제정
 -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 중복 제정하고 있거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兩 조례간 통합 조정 바람직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지원조례 미제정 자치단체에 대한 제정 독려(연중)
-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통합 정비 방안 마련('11. 9월)
-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 개정('10.12월) 후속조치*(연중)
 - * 자치단체의 '연도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주민 지원 민관협의체' 및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신설 등
-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상황 평가('11 지자체 합동평가 시)

③ 지역단위 외국인정책 민관협력체제 구축(신규)

□ 주요 내용

《 추진근거 》

- 『외국인주민지원조례 표준안』(‘10.12.31 개정) 제7조 및 제12조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설치·운영

- (기능)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심의·자문(서비스 사각지대 발굴·조정 및 기관간 역할분담 체계화)
- (구성) 자치단체·지역공공기관*·종교·민간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외국인주민 등 15인 이내
 - * 경찰서,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센터 등
- (운영) 연 2회 정기회, 필요시 수시회의

《 운영사례(안산시) 》

- '08. 5월 구성, 총 17회 개최
- 위원 :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안산YMCA, 교회,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결혼이민자 등 19명
- 기능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협의·조정
- 실적 : 원곡본동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다문화특구 지정 등 논의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설치·운영

- (기능)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자문
- (구성) 자치단체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20명 이내
- (운영) 필요시 수시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지원 민관협의체 및 자문회의 설치 권고('11. 3월)
- 외국인정책 민관협력체제 구축 현황 평가분석('11. 12월)

4]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계속)

□ 주요 내용

○ 자치단체 외국인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설명회 및 연찬회 개최

-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업무설명회*, (하반기) 행안부 주관 업무연찬회

*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부처 합동

- 전문가 초청 특강, 관계부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설명, 우수자치단체 사례발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등 운영

○ 『다문화 이해』 공무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운영

-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활용

- 정부의 다문화 정책 추진방향 및 부처별 지원 정책, 사례발표 등

※ '10년 운영실적 : 17개 교육원, 57개과정 6,970명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업무편람(매뉴얼) 발간·배포

- 외국인주민의 개념 및 법적지위, 중앙부처·자치단체 지원 정책, 우수 지원사례 등 수록

-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관계자 등에 배포·활용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 자치단체 공무원 업무설명회('11. 2월, 80명)

○ 행안부 주관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연찬회('11. 11월, 60명)

○ 다문화 이해 공무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연중, 7천명)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업무편람 발간('11. 11월, 1,000부)

5]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실시(계속)

□ 현 황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06년부터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조사 실시
- ※ 여가부 주관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별도 실시('09년 최초)

□ 주요 내용

- 조사기간 : 매년 2~5월 * 조사기준 : 매년 1. 1 0시
- 조사대상 : 한국국적 미취득자(외국인 등록을 하는 90일 초과 체류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 조사내용
 - 외국인주민의 유형별·국적별·성별 현황
 -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 현황(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 조사방법
 - 외국인주민 현황은 자치단체(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관련 전산 시스템*에 의한 서면조사(필요시 가구방문 조사 병행)
 - * 외국인등록정보(법무부)·주민등록(행안부)·가족관계등록정보(대법원)
 -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 현황은 시·군·구, 시·도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 조사

□ 향후 추진계획

- '11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계획 수립·시달('11. 2월)
- 본 조사 실시('11. 2~5월)
- 조사결과 집계·분석 및 조사결과 발표('11. 5월말)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1] 외국인주민 공공부문 채용 및 정책참여 확대(신규)

□ 추진 배경

-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공직배려와 정책참여 확대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향한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

□ 주요 내용

- 외국인주민 공공부문 채용 및 취업 알선
 - 계약직 채용자를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상 특별임용요건 추가(지방공무원법 개정)
 - ※ '10.12월말 현재,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주민(귀화자 포함)은 43명임
 - 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 확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자치단체 공공부문 취업 알선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위원 위촉,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 자문
 - 지역단위 통·리반장,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위촉 확대 등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 공공부문 채용 및 정책참여 확대 권고('11. 3월)
- 지방공무원 임용 확대(계약직→일반직 특채)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제출('11. 2~6월)
- 외국인주민 공공부문 채용실적 파악·분석('11. 6, 12월)

② 주민자치센터 활용 외국인주민 생활민원 해소(신규)

□ 추진 배경

-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
 - ※ '10. 12월 현재, 전국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총 3,125개 임
 - ※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주민들이 지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59개)를 방문하여 민원 및 고충상담 등을 하고 있으나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

□ 주요 내용

- 『외국인주민 생활불편 민원 접수창구』 설치·운영
 -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전용 창구설치
 - 전담공무원 배치, 생활불편민원·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 외국인주민 대상 한글교실, 정보화 교육, 요리강좌 등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1~2명 정도),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 수강비용 감면 등 추진
 - ※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등을 협조 받아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활용 외국인주민 생활민원 해소대책 시달('11. 4월)
- 외국인주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현황 분석('11. 12월)

③ 외국인주민 관련 민원제도 개선(계속)

□ 주요 내용

○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민원서류 다국어 표기 서비스

- 외국인주민 및 귀화자를 위한 민원신청서식 및 안내화면 외국어 서비스 제공('11년 중 토지대장열람 등 5종의 민원 추가)

※ '10.12월부터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15종의 민원을 5종의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서비스 중

○ 귀화자의 경제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

- 귀화자의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귀화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 미연계로 귀화 후 금융·부동산 거래,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경제활동에 불편 초래

※ '10. 8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결혼이민자를 기재

○ 외국인주민 생활불편 민원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 주민자치센터 '생활불편 민원 접수창구',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접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신규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다국어 서비스 추진('11. 3~10월)

- 대상 민원 추가 확정(3~8월), 서비스 확대 개시(10월)

○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1. 2~6월)

○ 외국인주민 생활불편 민원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수시)

④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속)

□ 추진 배경

- 최근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1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 인구의 5% 이상)*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 향상 시급
 - * ('06년) 8개 → ('07년) 16개 → ('08년) 22개 → ('09년) 32개 → ('10년) 34개
 - ※ 추진근거 :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08.10월) 및 '제1차('08-'12)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08.12월)

□ 그동안 추진실적

-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08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추진
 - 다국어 홍보게시판, 공공시설 안내판 설치, 소공원 쉼터 조성 등
 - ※ ('08년) 14개 자치단체 3억원, ('09년) 13개 " 1.8억원, ('10년) 7개 " 1.8억원
- '11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지원 사업 추진계획 시달('11. 2월)

□ 향후 추진계획

- '11년도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11. 3~12월)
 - 집거지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이색·차별화된 특화발전 추진
 - 사업 확정 및 사업비 교부(3월), 본 사업 추진(3~12월)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종합 발전방안 마련('11. 4~6월)
 - 지원 근거법률 제정, 중장기 발전전략,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사후 관리 방안 등
 - ※ 집거지 내 민생치안소방안전 등 슬럼화 방지대책 병행 추진
 - 시안마련(4월), 관계기관 의견수렴(5월), 최종안 확정(6월)

㉔ 자원봉사자 활용 외국인주민 지원 시스템 구축(신규)

□ 추진 배경

- 최근 외국인주민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대부분이 저소득 소외계층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에는 한계
- 따라서 이들 저소득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필요

□ 주요 내용

- 자원봉사단체(248개)와 연계, 자원봉사 및 협력사업 추진
 -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별 『외국인주민 지원 나눔 봉사단』 구성·운영, 기업체·NGO 등과 협력사업 추진
 - 가족상담, 자녀학습지도, 한글교육, 의료봉사 등 활동 수행(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 등과 연계)
- 의료지원 사각지대 외국인주민에 대한 의료봉사 강화
 - 국적미취득 다문화가정의 고위험 신생아(미숙아),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장애아 및 고위험 질병(심장병, 혈우병 등) 보유자 대상
 - 열린의사회, 한국심장재단, 한국혈우재단 등 의료봉사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독지가 등과 연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자원봉사자 활용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마련·시달('11. 4월)
- 의료봉사단체·사회복지법인 등과 MOU 체결('11. 5월)

3. 다문화사회 분위기 확산

1]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교육프로그램 내실화(계속)

□ 현황 및 주요내용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 대상 : 모범결혼이주여성(3년차 이상) 및 교육이수 희망자
- 내용 : 한국사회에 정착한 모범결혼이주여성들이 신규 이민자의 생활 안내 및 멘토 교육

※ 결혼여성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도자 양성 교육을 '09년부터 민간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해 옴

○ 외국인주민 대상 생활정보 안내 및 정보화 교육

- 한국문화,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등 생활정보 안내 제공
- 주민자치센터, 지역정보화센터 등을 활용한 정보화 교육 실시

□ 그동안 추진실적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09~'10년, 총 2,969명 교육이수)

※ 시·군·구 단위 현장교육 실적 : ('09년) 36회 1,964명, ('10년) 18회 1,005명

○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생활 가이드북' 발간·배포(100천부)

□ 향후 추진계획

○ '11년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11. 3~11월)

- 교육계획 수립(3월), 본 교육 실시(3~11월, 1,500명)

○ 다문화가정 배우자 공동교육 시범운영 지원('11. 5~6월)

- 교육과정 시범 운영(5월), 확대실시 지침 시달(6월)

※ 가정의 달에 주민자치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계 실시

○ 다문화가족 등 정보화 교육 실시('11. 2~12월)

- 교육계획 시달(2월), 본 교육 실시(3~12월)

② 범국민 인식 개선 및 다문화사회 공감대 형성(계속)

□ 현황 및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문화 생활체험 우수사례 발굴·확산**
 - ※ 다문화체험 수기공모, 수기집 발간(행안부·법무부·새마을운동중앙회 합동)
-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 지원**
 - ※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를 초청, 한국문화 체험 및 사위집 방문 행사로 '09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07~'08년은 행안부에서 직접 시행)

□ 그동안 추진실적

-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 및 포상
 - ※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외국인근로자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39편 포상
-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배포
- '10년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 33가정, 60명 초청) 지원
 - ※ 실적 : ('07년) 43가정 86명, ('08년) 31가정 61명, ('09년) 74가정 148명
-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지원(베트남 9개 가정, 필리핀 등)
 - ※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상시 화상상봉 추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11년도 다문화 생활체험 수기 공모 및 수기집 발간('11. 3~7월)
 - 수기공모 및 시상(3~5월), 수기집 발간·배포(7월)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실시('11. 7~9월)
 - 초청대상자 선정 및 행사계획 수립(7~8월), 본 행사(9월)
- 다문화가정 고향가족 화상상봉 상시 실시('11. 7월~)

IV 자치단체 협조사항

①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종합 지원계획』 수립·시행

-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연도별 자체 종합 지원계획 수립
 - 목표와 비전,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개정, 외국인주민 민관협력체제 구축, 시책별 세부추진계획 등
 - ※ 외국인주민이 일정규모(1만명 또는 주민등록인구의 5%) 이상인 집중거주지 자치단체는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계획’을 포함
- 종합 지원계획 수립 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3월 중)

② 국비사업 지방비 부담분 확보 및 사업비 집행 등 만전

- ‘집거지 개선사업’ 등 국비사업은 국비지원액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제1회 추경 등을 통해 필히 확보(4월까지)
- 국고보조금 등 국비예산 적기 집행 및 사업추진상황(진도) 관리 철저
- 국비 지원사업 완료 시, 국고보조금 정산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확행

참 고**외국인주민 현황 ('10.1.1 기준)****□ 외국인주민수 : 1,139,283명**

○ 주민등록인구(49,773,145명)의 2.3%, '09년(1,106,884명) 대비 2.9% 증가

□ 유형별

| 국적미취득(920,887명, 80.8% / 90일 이상) | | | | | 국적취득 (96,461명, 8.5%) | | 자녀 |
|---------------------------------|-------------------|-------------------|-------------------|--------------------|-------------------------|-------------------|---------------------|
| 근로자 | 결혼이민자 | 유학생 | 재외동포 | 기타 | 혼인귀화 | 기타 | |
| 558,538명 (49%) | 125,087명 (11%) | 80,646명 (7.1%) | 50,251명 (4.4%) | 106,365명 (9.3%) | 56,584명 (5.0%) | 39,877명 (3.5%) | 121,935명 (10.7%) |

※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수 합산, 181,671명

□ **국적별** : 중국 55.9%(한국계중국 39.9%), 동남아 21.8%, 미국 5.6% 등□ **지역별** : 수도권 64.8%(경기 29.7, 서울 29.5, 인천 5.6)**□ 집중거주지**

《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 : 34개

| | | | |
|--------|-------------------------------------------------------------------------------------------------------------------------------------------------------------------------------------|-------|------------|
| 서울(16) | 영등포(44,281)·구로(33,700)·관악(22,635)·금천(22,392)·용산(16,405)·광진(15,611)·동대문(14,773)·동작(12,973)·강남(12,747)·송파(11,807)·서대문구(11,467)·종로(11,104)·마포(10,829)·성북(10,736)·성동(10,690)·중구(10,060) | | |
| 인천(3) | 남동(14,076)·서구(12,393)·부평(11,360) | | |
| 경기(13) | 안산(43,190)·수원(31,552)·화성(26,294)·성남(23,180)·부천(20,449)·시흥(19,498)·용인(18,495)·고양(16,606)·평택(13,585)·김포(13,251)·광주(11,110)·포천(10,449)·파주(10,291) | | |
| 충남(1) | 천안(13,196) | 경남(1) | 김해(14,653) |

《 인구대비 5% 이상 》 : 15개

| | | | |
|-------|---------------------------------------------------------|-------|----------|
| 서울(6) | 영등포(10.9%)·금천(9.1%)·구로(8.0%)·중구(7.8%)·용산(6.9%)·종로(6.6%) | | |
| 부산(1) | 강서(6.0%) | 인천(1) | 중구(5.4%) |
| 경기(4) | 포천(6.6%)·안산(6.1%)·김포(5.9%)·화성(5.3%) | | |
| 충북(2) | 음성(6.2%)·진천(5.6%) | 전남(1) | 영암(8.9%) |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서울특별시

외국인도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Seoul, a Foreigner-friendly Global City

2011. 1. 20

서울 특별시
(외국인생활지원과)

홍표日報

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A20면 사

“몽골선 치아 아픈 사람 돌봤는데 한국선 마음 아픈 몽골인 돌봐요”

■ 서울글로벌센터 상담원 서드니모 서드블랙 씨

“최근에는 공직장이 될 거라고 하고 했는데, 경향이 부족해 ‘오븐’이라고 했더니 기계에 치러낸 유출 유출 근포자 대리에 부여해한다는 상담을 받았어요.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드니모 서드블랙 씨(30)는 몽골 아무르강 사이에서 유망인사다. 2008년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몽골인 상담원으로 일하며 몽골인 근로자들의 친구, 결혼이민자들의 멘토, 유학생들에게는 친해 역할을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 선별서울글로벌센터에서 만난 서드블랙 씨는 “한 근로자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배가 부러지는 시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고용주에게서 퇴원이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이것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담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다”며 언급하였다.

● ‘밥 먹 vs 밥 돌리다’

서드블랙 씨는 하루에 보통 20건 정도 상담한다. 상담을 원하는 몽골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몽골계통 해외로 이민을 갈지, 노동조건, 사업장 변경, 근로자 복귀 등이다. 나머지는 결혼이민자의 후원, 비자, 스포츠 관련 상담이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가 탈민족이라는 오해 때문에 가 배운 사람들이 많다. “한 근로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님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고백하면 주는 데 무슨 소용이요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식사로 밥하고 나물만 나오셔서 그랬더라고요.”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상담 중인 서드니모 서드블랙 씨. 조종현 기자 jh@korea.com

몽골국립대 치대 졸업한 수재 한국에 외 복직상담가로 변신 결혼 이민자들의 ‘멘토’

몽골 사람들의 주식은 양고기 같은 육류다. 밥과 김치가 없으면 한 끼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은 것처럼 몽골인들도 고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고 느낀다. 서드블랙 씨는 상담원에게는 “근로자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반찬도 고기를 자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에게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식문화에 적응하라”라고 충고했다. 서로 적응하려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한데 “돈 벌러 온 너를 내가 고용했으니 주는 대로 먹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한 근로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꼬박꼬박 주는 데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식사로 밥하고 나물만 나와서 그랬더라고요.”

○ **치과의사에서 사회복지사로**
서드블랙 씨는 몽골국립대의 학과를 졸업하고 치과위생사로 일하던 재능이다. 2004년 한국어를 중 고배의 정문을 보고 왔다는 생각에 한국어학당에 등록했다. 치과 의과기사를 공부할까 생각했지만 몽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면서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이후 아예 승진해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입학했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20~30년 동안 살아가는 고국의 생활방식이 있는데 오지마라 할인하면 행동 하라고 할데도 안들어요. 사적 친구들이 집에서 야기에게 도움이 될 못 쓰게 한다거나 아이 앞에서 한국어를 사투리라고 무시하기도 해요. 아이가 두 언어를 함께 배우면 좋은 일 아닌가요?”
서드블랙 씨는 “다문화사회 구 성원들을 출신국의 경제 수준으로 구분하지 말고 각각의 문화와 개인 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가 다른 문화를 얼마나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종현 기자 jh@korea.com

“한 근로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꼬박꼬박 주는 데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식사로 밥하고 나물만 나와서 그랬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의 주식은 양고기 같은 육류다. 밥과 김치가 없으면 한 끼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은 것처럼 몽골인들도 고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고 느낀다. 서드블랙 씨는 사장에게는 “근로자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반찬도 고기를 자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에게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식문화에 적응하라”라고 충고했다. 서로 적응하려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한데 “돈 벌러 온 너를 내가 고용했으니 주는 대로 먹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을 무조건 동정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쳐야 할 행동은 꼬집는 호된 상담원이라고 평가한다. 서드블랙 씨

목 차



다문화사회 진입

I 서울의 외국인 정책환경

II 서울시 외국인 정책 추진경과

III 분야별 외국인 정책

- ❖ 글로벌 존 서비스 강화
- ❖ 체류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 ❖ 다문화 이해 및 소통 강화
-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IV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만족도 상승

V 우리의 목표는?

1. 서울의 외국인 정책환경



서울인구 3.3%, 매년 지속증가



1. 서울의 외국인 정책환경



전문인력 8.7%, 비전문인력 91.3%



1. 서울의 외국인 정책환경



유학목적 77.7%, 국어연수 22.3%



1. 서울의 외국인 정책환경

서울시 결혼이민자 현황



국적미취득 70.5%, 국적취득 29.5%

1. 서울의 외국인 정책환경

외국인투자자 현황 - 서울시주민등록통계



2007년 외환위기 이후 소폭 감소

1. 서울의 외국인 정책환경

외국인관광객 : 782만명(2009) → 880만명(2010)



2. 서울시 외국인정책 추진경과

- 서울글로벌화 전략 수립 : 2007. 8월
 - 글로벌 존 조성,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생활환경 개선 등
- 글로벌 인프라 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 : 2008 ~ 2009년
 - 글로벌센터, 빌리지센터, 비즈니스 지원센터, 근로자센터 설치
 - 지하철 시내버스 외국어안내방송, 글로벌부동산, 외국인학교 건립 등
- 외국인도 행복한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2010년 ~
 - 외국인 체류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광역지자체 중 최초 외국인전담부서 신설 (2010.9월)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 사업 중심)

외국인도 행복한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체류 유형별 맞춤형 정책 강화 -

글로벌존 중심의 외국인
지원서비스 강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일상생활 불편없는
글로벌 환경 조성

- 글로벌화 사업 성과 및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사업 업그레이드
-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투자자 등 다양한 수요와 변화된 외국인 정책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10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1. 글로벌 존 서비스 강화

① 글로벌클러스터 빌딩 건립 추진

- 종로 서린동 / 지하4층 지상 15층 / ' 10.6월 착공, ' 12. 10월 완공
- 서울글로벌센터 확대 이전, 외국특상공역역소, 졸업국사무소, 편의시설 등 입주
- ※ 외국인어 모든 어려움을 한곳에서 해결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② 근접서비스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강남지역)

- 삼성동 코엑스 / ' 10.5월 개관 / 영중영 3개국어 서비스
- 소자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규백어당 사업 추진
(1인용 사무공간 3실 확보, 개인용 PC· 전화 등 제공, 6개월 입주)
- ※ 여의도 지역 글로벌 비즈니스 존은 2011. 9월 국제금융센터에 설치 예정

③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 강화

- 여객동(엘리언), 광역동(공골, 러시아), 보문동(베트남) 등
- 제주 일요일 현장상담 여의에 이동서정 버스 투입 정월 상담 신설

④ 외국어 사용환경 상설점검반 운영(' 10.3월부터)

- 영·중·일 원어민 3명 포함 4인 1조 / 외국인안내표지판, 교통안내방송 등 점검



11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서울 글로벌 센터

출입국, 은행, 운전면허, 휴대폰, 세무 등 원스탑 서비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7개 국어 상담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서울 글로벌 빌리지 센터

Hannam-dong Is Mini-Global Village in Central Seoul

This is the second in a series of articles spotlighting districts in Seoul popular among foreign residents. —ED

By Jane Han
Staff Reporter

Whether you're Indian, German or Thai, at Hannam Supermarket, it's not a challenge trying to shop for a dish from back home. The overwhelming variety of foreign labels and rare ingredients available at this popular neighborhood store tells something about who lives in the area.

"More than 60 percent of our regular cus-



Chairman Koo Bon-moo have picked Hannam-dong as home.

"Foreign residents have a close-knit community, so that seems to be one of the assets that accounts for the high rental prices," said Park, adding that this is also why they choose to

"Some properties may have lost some value due to aging, but the overall market downturn hasn't affected foreign rental prices significantly," she explained, adding that foreigners account for 70 percent of residency in homes specifically built to lease.

She said that Korean owners prefer lending to foreigners because monthly rents give them better returns than "chonso," they rarely cause damage to homes and follow through with their contract terms.

Chonso is a unique rental system in Korea, in which a large deposit is left with the owner for



ers living in Seoul. The picture sh

cause of its convenient loc

of available amenities, nee

s, subdued atmosphere a

says area brokers.

also reasons why people

ing Chairman Lee Kun-hee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2. 체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정)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 : 09년 6개소 → '10년 20개소 ['12년까지 25개소]

- 추진현황 : '10.1월 14개소 추가 설치•운영중 (향후설치 : 중구, 성동, 도봉, 양천, 서초)
- 주요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녀언어교육 지원, 취업교육, 상담 등

② 다문화 가정 자녀 보육시설 확충 : 매년 3개소 이상 추가 확충

- 추진목표 : '09년 현재 6개소 ⇒ '10년 9개소 ⇒ '12년 15개소
- 지원내용 : 학부모교육비, 교육기자재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등(시설별 연 15백만원)

③ 국제결혼 준비학교 운영 : 국제결혼 준비 또는 국제결혼 신청자 대상 (4회 160명)

- 추진계획 : 국제결혼준비학교 운영기관 지정 및 5월부터 실시
- 교육기관 : 중앙대 산학협력단 등 4개소
- 교육내용 : 국제결혼 의미, 가족생활, 다문화사회 준비교육, 양성평등, 부부간 소통 등

14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2. 체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정)

④ 다문화 가정 언어불편 해소 지원

- 주말 한국어교실 : 요리, 미용, 육아 등 일상생활 용어 중심 / 연 3기, 기당 6개반
- 모자 한국어교실 : 결혼이민자 마취약어동어염색하는 한국어강좌 신설 / 연 2기, 기당 2개반
- 다문화 역량 :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음악, 미술, 체육, 문화 체험 등 / 연 2회
- 자녀 언어교육 지원 : 부모교육 CD 및 언어교육메뉴얼 보급
 - 자녀 언어에 대한 가정지도 방법, 이중언어 교육방법 등을 6개국어 CD 제작

⑤ 결혼 이민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 5월부터 여성인력개발기관중 권역별 4곳에서 직업적성 진단, 직업교육 등 실시

⑥ 기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 전용홈페이지 구축 : mcfamily.seoul.go.kr / 5개국어 / 6월부터 서비스
- 한울타리 생활안내서 발행 : 10개국어 / 3만부 / 6월 발행•배포

15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2. 체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외국인 근로자)

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충: '09년까지 6개소 → '10년 7개소

- 영등포 당산동에 추가 설치완료('10. 5월 개관)
- 강북지역 1개소는 상반기 설치지역 검토 후, 하반기 설치 예정
- 주요사업: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의료지원, 생활상담 등



② 외국인 근로자 언어 불편 해소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산업현장 적응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대화 중심 한국어교재 개발·보급('10. 11월)
- 산업현장 용어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강좌 운영: '10.1월부터
- ▶ 연 3기, 기당 4개반 / 매주 일요일



16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2. 체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외국인 투자자)

① 외국인 창업대학운영 강화

- 교육주기: 분기별 1회(연 4회)
- 대상,시간: 소자본 외국인 예비창업자(10과목 20시간)
- 교육내용: 창업절차, 조세, 노무, 법률, 한국 비즈니스
- ※ '08~'09 2년간 229명 수강 / 창업 33건(2,677백만)
- 사후관리: 지속적인 1:1컨설팅 및 정기적인 교육수료자 모임 운영 등



②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터당 사업 시범운영('10.5월)

- ▷ 1인용 사무공간 3실(1실 3평) 확보
- ▷ 사무기기(PC, 전화, 책상, 팩스 등) 및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6개월간 무료입주



17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2. 체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외국인 유학생)

① 외국인 유학생 포럼 운영 [Seoul International Student Forum]

- 총회, 서울시 기관방문, 복지시설 자원봉사, 조별 프로젝트 활동
- 외국인 유학생의 아이디어 및 제안사항을 시정 반영, 불편사항

※ '09년부터 운영 : 매년 30개국 110여명 외국인유학생 참여



유학생 포럼

③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시정 참여기회 제공

- 참여대상 :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교포 자녀 70여명
- 참여기간 :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1개월씩
- 역할 : 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해외마케팅, 국제교류, 통역, 외국인 상담 등 역할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3. 다문화 이해 및 소통 강화

①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외국인 상설공연: '10.5~10월

- 매일 점심시간대 무교동 광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국의 문화 공연
- 20개국 50여개 공연팀(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러시아 등)

② 외국인 베틀시장 개최: 연 6회, 신설동 풍물시장 등

- 내·외국인들의 문화교류 및 물품판매, 나눔의 장
- ※ '09년 : 7회, 23개국 250여명 참여 / '10년 : 5회 170여명 참여

③ 외국인이 들려주는 다문화 교육 : 40여개 초·중학교

-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초·중학교 방문, 자국의 문화 소개

④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16개행사 지원

- 몽골 나담축제, 아일랜드 포크댄스축제 등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학교)



용산 국제학교



서울 일본인학교(DMC)



반포 돌위치칼리지



드와이트 스쿨(DMC)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KOTRA,

Items to be confirmed after signing a contract and before moving in

- You should inspect the location of the house.
- You should keep all utility bills (gas, electricity, water, management expenses, etc.) and the acceptance certificate for the key.
- Telephone, internet, television, home security and fire safety equipment, etc.

Other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 You should confirm the Agent status (date relating to the house before signing a contract. However, it is mandatory by law for the real estate agent to sincerely and accurately explain to the tenant about the status, location and the right relation of the property and also to provide the relevant data, such as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Therefore, you should be careful when signing a contract directly with a landlord or a subletter.
- If you are signing a contract on your own, you should report your change of address to the nearest immigration office or the nearest holder's temporary place of residence. This should be done in conjunction with obtaining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from a nearby registry office.
- In cases where a lease contract is being signed on behalf of a corporation or in the name of an organization, collateral security, or leasehold right, is established on the applicable land and building at a registry office to protect the tenant it is decided over the rights of the landlord should also. However, the tenant is responsible for the expenses related to establishing the collateral security and leasehold right.

Real Estate Rental Guide
English

A Guide to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s

◎ The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the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Enforcement Decree and the Detailed Enforcement Rules on the said act.
◎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Ordinance on Housing Brokerage Commissions, etc. (announced on May 29, 2007)

■ Housing Property (including annexed land and the rights to purchase housing):

| Type of transaction | Transaction price | Maximum rate | Upper limit of amount | How to determine Brokerage commission rate | Calculation of transaction price |
|---------------------------------------------------|--------------------------------------------------------|--------------|-----------------------|-------------------------------------------------------------------------------------------------------------------------------------------------------------------------------------------------------------------------------------------------------|------------------------------------------------------------------------------------------------------------------------|
| Purchase & sale (exchange) | Below ₩200 million or more, but less than ₩200 million | 3.00% | ₩220,000 | The upper limit of the brokerage commission is calculated on the applicable maximum rate provided, however, that the amount is calculated that does not exceed the applicable upper limit of the amount. | *Purchase & sale transaction price *Exchange: the higher of value of the two transactions |
| | ₩200 million or more | 4.00% | 30A | | |
| Lease, etc. (other than purchase & sale/exchange) | Below ₩200 million or more, but less than ₩200 million | 3.00% | ₩200,000 | *To be determined by the lessor and the real estate agent ("Agent") through consultation, to the extent of its prescribed maximum rate, as indicated in the "Classification of real estate" and remaining within the regulatory maximum rate of 100%. | *Lease: one deposit *Purchase: Key money *Exchange: none *Mandatory deposit *Temporary deposit ₩100,000 |
| | ₩200 million or more | 4.00% | ₩300,000 | | |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

DMC ville 175세대 공급,
우면동에 178세대 추가 공급



22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

- **외국인 전담진료소 확대 : '09년 11개소 ⇒ '10년 14개소**
 - '09년 현재 신촌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11개소 지정운영
 - '10. 3월 건국대병원 지정완료, 하반기 1개소 추가 지정 예정
- **외국어 진료가능 병원, 약국 정보 제공**
 - 외국인 진료가능 의료기관 위치, 가능언어, 전화번호 등
 - 서울글로벌센터, 120다산콜센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통해 정보제공
 - ※ '10. 3~4월 실태조사 결과 : 988개소(병·의원 670개소, 약국 318개소)
- **보건소, 시립병원 외국인 진료기능 강화**
 -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열린 보건소 시범운영(영등포, 금천 / 5월부터)
 - 시립병원 외국인 전용창구 2개소 ⇒ 4개소 확충(서울의료원, 은평 / 동부, 보라매)
- **1339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외국어 서비스 강화**
 - 통역인력 확대 : 9명 ⇒ 11명(영어 4명, 중국어 4명, 일본어 3명)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영·중·일) : '10. 4월

23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교통환경)

-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하철역 이용안내체계 개선**

- 명동역, 동대문역, 경복궁역 등 54개소에 1회용 교통카드 발매 및 이용방법 안내배너 202개 설치완료('10.3월)

- **포켓용 외국어 노선도 제작 배부**

- 제작 : 영·중·일어 3개국어 30만부 (4월현재 18만부 배부완료)
- 배포 : 지하철이용 외국인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지하철 역사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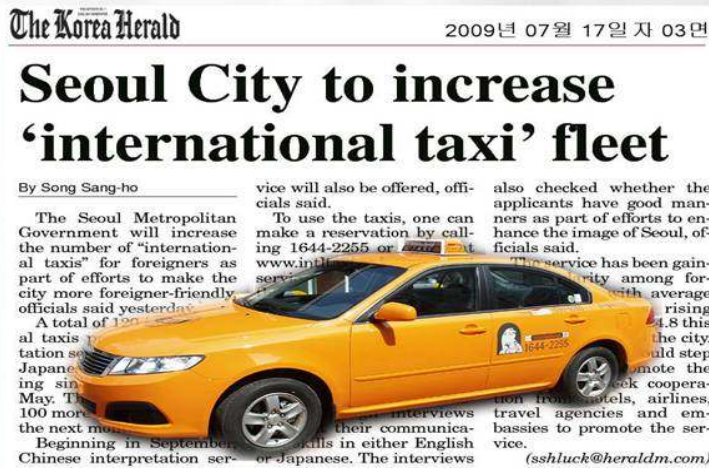
- **지하철역 중국어, 일본어 안내방송 확대('10.4월)**

- 중국어 안내방송을 국어 원음으로 통일 : 진부지창 ⇒ 김포공항
- 중국어 안내방송 지하철역 : 기존 31개역 ⇒ 50개역으로 확대
- 일본어 안내방송 지하철역 : 기존 19개역 ⇒ 50개역으로 확대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교통환경)



외국인 관광택시 330대 운영, 영·중·일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일상생활)

● 외국어 생활고지서 확대 시행

- 정기분 지방세(취득, 등록, 주민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 동봉
⇒ 하반기부터 모든 고지서에 영어병기, 외국어 안내문 동봉(영, 중, 일, 불)

● 외국인이 자주찾는 민원서식 번역 제공

- 어디서나 민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 등 26종 / 영·중·일·불 번역 보급 ('10)

● 문화공연, 체육시설 이용 외국어 예약시스템

문화공연('10. 4월, visitseoul.net)

체육시설 등('10.11월, yeyak.seoul.go.kr)



| 2009 Property Tax Information | |
|-------------------------------------------------------------------|-----------------------------------------------------------------------------------------------------------------------------------------------------------------------------------------------------------------------------------------------------------------------------------------------------------------------------------------------------------------------------------------------------------------------|
| Legal guide to owner | Property Tax Law: Tax Collection Cases 50-95, section 4; City Planning Tax: Public Facilities Tax Law: Tax Collection Cases 50-95, Local Election Tax Law: Section 25 |
| Taxpayer | Taxpayers: not only a wide range of property (including land, buildings, houses, boats or planes) as of June 1st, 2008. Also, the person who is assessed on the basis of an official housing price in the official price of building, a lot or an asset registered by the land register established by effect of the Real Estate Tax Act. |
| Assessment standard | The basis of the local government: because the price of taxable property in consideration of the needs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local financial conditions. The tax base of a house is up to 80 percent of the value and that of a building 70 percent of its value this year. |
| Evaluation of where increase in taxation | In order to ease the burden of local tax increase in taxation, a system by which housing tax cannot increase by more than 10% in comparison to your 2008 rate in place. |
| Contingency period | Taxes are not paid by the delinquent date, then a 5 percent default penalty and mostly penalties of 7 percent are added to the principal amount up to 90 months in case the property tax exceeds 30,000 won. Long-term default results in delinquency deposits such as property placement. |
| How to pay late has right of appeal | Individuals whose property tax exceeds 30,000 won and who do not pay by August 31 should have the right to appeal each day after the due date. |
| Contingency period | If you believe the amount you have been taxed to is in error, please register your complaint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bill. The case can be either by lodging a formal objection with either your district office or with the office of the regional director of tax assessment, by using our center for the tax appeals, or by filing an administrative lawsuit. |
| Information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pplied to houses with 800 million won in the government assessed price (80 million won in case of housing holding on the same house). Payment can be made in December through December 31.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al Estate Tax" 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under the menu "Home Taxation" in the National Tax Service homepage. |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일상생활)

■ 120 다산 콜센터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서비스 제공



3. 분야별 외국인정책(2010년사업 중심)

4.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일상생활)

영어전문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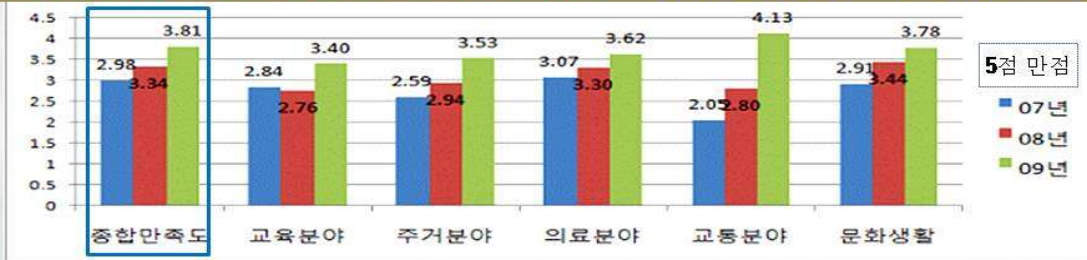


외국인 청취자 눈높이에 맞게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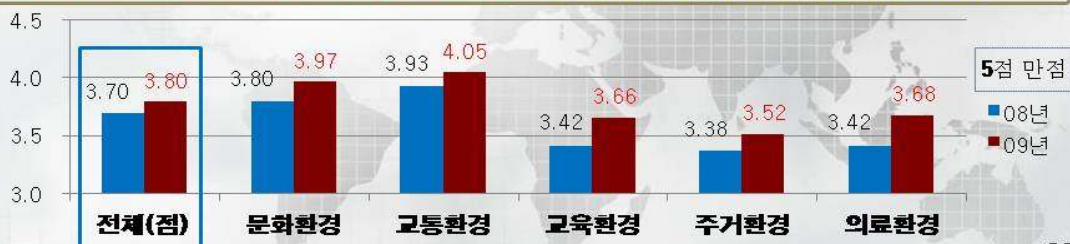
4.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만족도 상승

1. 외투기업인 생활환경 예로조사(KOTRA) : 2.98점(07년) ⇒ 3.81점(09년)



<'09.8~9월 / 외투기업 임직원 300명(서울 177명) /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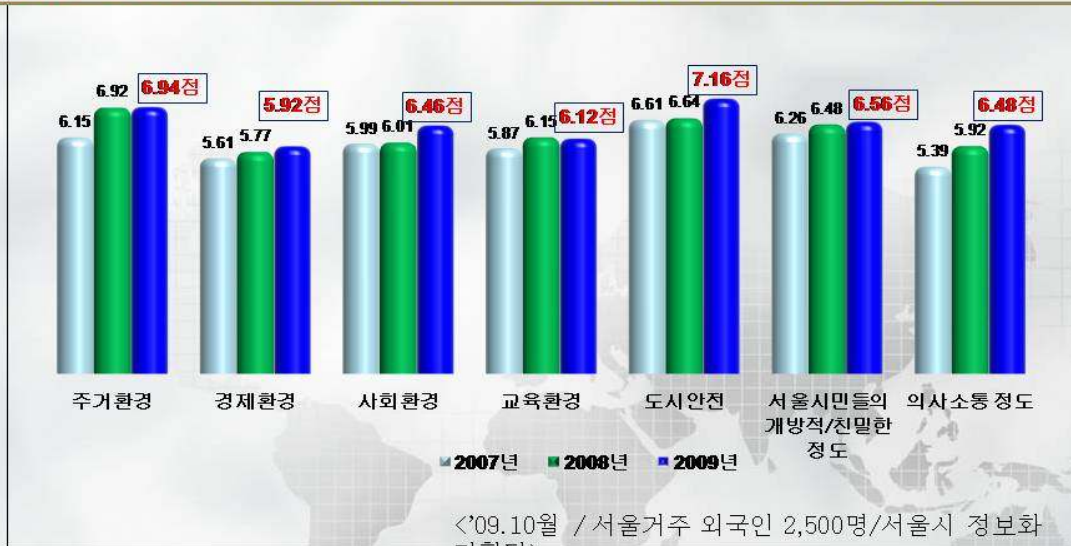
2.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실태조사 : 3.7점(08년) ⇒ 3.8점(09년)



<'09.11~12월 / 외국인 961명 /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4.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만족도 상승

3. 서울 서베이 : 5.94점 (07년) ⇒ 6.15점 (08년) ⇒ 6.52점 (09년)



30

5. 우리의 목표는?

비 OECD계 외국인 배려

10년후, 20년후를 대비하는
다문화정책 추진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31

5. 우리의 목표는?

